민원 인쇄
인쇄자: 김명호

신청 정보

신청번호	1AA-2611-0457321
신청일	2026-11-12 05:58:23
신청인	김명호
신청인 구분	개인
주소	
진행상황 통지방식	전자우편 , 누리집(홈페이지)
민원답변 통지방식	전자우편, 누리집(홈페이지)
유선전화	
휴대전화	
전자우편	mkim1795@daum.net
보안 설정	아니요

민원 신청 내용

민원종류	일반민원
제목	국민 권익 착취하는 박재현과 조흥래를 고발한다
내용	고 발 장 고소인: 김명호, 피의자: 국민권익 위원회 감사과 박재현, 주택과 조흥래 제목: [형법] 제122조(직무유기) 공무원은 [헌법] 제7조,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에 따라, 법령 준수하며 국민의 봉사자로서 성실히 직무 수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의자 박재현과 조흥래는 국민권익이 뻔히 침해되는 것을 인지하고도 2차례 이상 직무유기 하였기에 고소한다. 피의 사실은 다음과 같다 피의 사실 전 은평경찰서장 김현환과 경무과 이주철은,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경찰서에 1. 주차장에 바리케이트 설치하고([주차장법] 제19조의 4 위반), 청사내에 불법 건축 카페를 운영함으로써([건축법] 위반), 국민 권익을 침해하였고, 얼마 전 새로 부임한 현 서장 이기범 또한 같은 범죄를 지속하고 있다. ⇒ https://seokgung.com/eunpyung10/corrupt9x.htm#20260324 2. 고소인은 그러한 사실을 피의자들에게 최소한 2차례 이상 인식하도록 주지시켰음에도 불구하고 [형사소송법] 제234조 (고발) 제2항 "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에 의하여 국민권익을 위하여 은평경찰서를 고발하기는커녕 은평경찰서에 시정조치조차 요구하지도 아니하고, 뚱딴지 같이 은평구청 주택과에 민원 이송했다는 "개소리만 반복"하고 있다(국민신문고 1AA 2610 1038185). 3. 국민권익 위원회라는 간판 기관에서 국민 권익 “착취”에 앞장서고 있는 이런 개돼지 새-끼들을 기소해서 당장 해고하라

첨부 파일	
피민원인명	박재현, 조흥래
피민원인 근무처명	국민 권익 위원회
피민원인 주소	
피민원인 연락처	

기피부서 정보

기피부서	공소청 중대범죄부 중대범죄1과
기피유형	공무원 비리
기피자 정보	장수경
기피사유	장수경 이 쌍-년은 돌-대가리라 민원 서류 제대로 읽어 보지도 않고 덮어놓고 이송하는데 미친 것.

처리기관 정보

처리기관	공소청